

ESG위원회 규정

2023년 05월 03일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하나미티리얼즈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 내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을 위하여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
-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나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ESG 관련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ESG 관련 주요 투자안건
- ③ 작업장 내 환경/안전/보건 등에 관한 사항
- ④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
- ⑤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정책 및 활동 심의
- ⑥ 인권 및 윤리경영 실천 방안
- ⑦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의결사항의 통지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3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기타

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정)

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2023.05.03)

이 규정은 2023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